

GANGJIN 

Web Contents



목차

목차	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3
지원대상	3
지원기간	3
지원내용	3
지원절차	3
신청방법	4
신청서류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방 난임 치료지원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안내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고위험 임부 건강관리물품 대여사업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지원대상

-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1인 1회 지원
 - * 부부 개별 신청, 검사의뢰서 발급 후 지원
 -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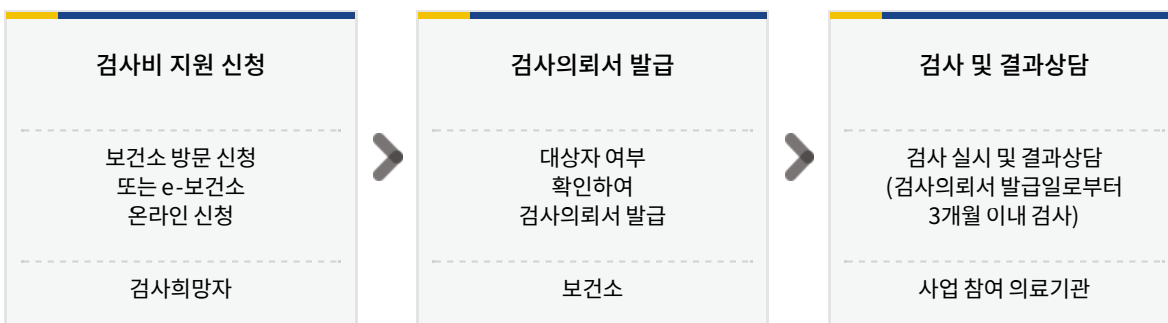
◎ 지원기간

- 2024년 4월 1일부터

◎ 지원내용

- 지원금액 한도 내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비 지원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최대 13만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최대 5만원
 - * 사업 참여 의료기관(e보건소 사이트에서 반드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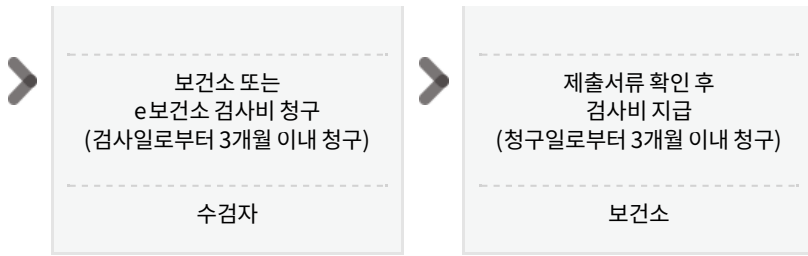
◎ 지원절차



검사비 청구

검사비 지급

 (<http://www.gangjin.go.kr>)



①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신청사이트\(e보건소\) 바로가기](#)

①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주소지 거주 : 추가 서류 없음 ▪ 별도 주소지 거주 : 아래 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 ① 청첩장 또는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외국인 중 배우자가 내국인일 때 지원 가능, ①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② 청첩장·사실혼 확인보증서 등 혼인관계 증명서류, ③ 외국인등록사실증명*(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GANGJIN

Web Contents

